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86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임문영 · 조인철 · 정태호
이주희 · 오기형 · 박해철
김성범 · 박균택 · 양부남
김준환 · 장철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폭염과 한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은 생업을 위하여 냉·난방기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폭염·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소상공인·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후재난기간(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취약계층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누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요금의 감면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제2항).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기후재난 시 전기요금의 감면 등)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기후재난기간(「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 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발효된 기간을 말한다)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의 요금을 감면하거나 전기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단가가 높아지는 요금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2에

다른 골목형상점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그 밖에 폭염·한파로 인하여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부담이 현저히 가중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요금 적용의 완화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요금 적용 완화의 대상·범위·기간·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요금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효되는 특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3(기후재난 시 전기요금</u> <u>의 감면 등) ① 전기판매사업자</u> <u>는 기후재난기간(「기상법」 제</u> <u>13조의2에 따른 특보 중 폭염</u> <u>또는 한파에 관한 특보가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u> <u>속하여 발효된 기간을 말한다)</u> <u>이 속하는 월의 전기요금에 대</u> <u>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전기사용자가 사용한</u> <u>전기의 요금을 감면하거나 전기</u> <u>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단가가</u> <u>높아지는 요금의 적용을 완화할</u> <u>수 있다.</u> <u>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u> <u>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u> <u>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u> <u>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람</u> <u>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u> <u>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u> <u>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u> <u>위계층</u>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
2호에 따른 상점가 또는 같은
조 제2호의2에 따른 골목형상
점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
인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

7. 그 밖에 폭염·한파로 인하
여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의 부담이 현저히 가중되
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
항에 따른 감면 및 요금 적용의
완화에 필요한 비용과 그로 인
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생
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및 요금
적용 완화의 대상 · 범위 · 기간
·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